

의안번호	2204026
의 퇴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 계 번호	24C3789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,246억원 (연평균 1,64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(안 제8조)	1,488	1,563	1,643	1,730	1,823	8,246	1,6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	- 중양생활보장위원회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% 이상 수준에서 결정 ※ (현행)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 30% 이상 수준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양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자로 설정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2(생계급여의 적용특례)	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음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	○	○ 의료급여의 최근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
2	안 제8조의2(생계급여의 적용특례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엄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신규 수급권자로 포함될 가구 수와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실적으로는 해당 정보가 부재
 - 개정안 시행 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를 둔 사람과 기준 중위소득 32% 초과 40% 이하인 가구가 신규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, 생계급여는 대상가구의 신청에 의해 수급권 판정 및 선정이 이루어지므로, 현재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그 수와 소득분포를 알 수 없음
- 다만, 현재 의료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이므로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와 평균 수급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조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동시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는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재하므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의료급여는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중에 있어 현재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정보를 활용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게 됨
 - － (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)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,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, 수급(권)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, 보호종료아동인 경우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규 수급 가구 수”에 “월 평균 지급 단가” 및 “지급 개월 수(12개월)”를 곱하여 산출
 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(안 제8조)

- (신규 수급 가구 수) 2023년 말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32% 초과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, 가구원 수별 2021~2023년 의료급여 수급가구 수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
[표 2] 의료급여 수급가구 세부 현황

(단위: 가구, %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 이상 가구
2023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32% 초과 40% 미만 가구 수	18,720	4,226	1,297	741	261	62	17
2021~2023년 의료급여 수급가구 연평균 증가율	2.9	-2.6	-7.0	-8.6	-7.6	-8.2	-5.9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(월 평균 지급 단가)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0%^(A)에서 2023년 말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32% 초과인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^(B)을 차감한 금액^(A-B)을 기준으로 하고,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추계

-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과 실제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초
 -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의 인상률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,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대상가구 소득인정액 증가율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
-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5년까지는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을 적용하고, 2026년 이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과거 추세를 적용
 -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준용하여¹⁾ 2026

1)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에 따르면, 기본적으로 차년도(n+1년)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(n년)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하되,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

년까지는 2021~2025년의 증가추세에 따라, 2027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의 과거 증가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

-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「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~2026)」을 통해 발표한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은 인상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

[표 3] 2023년 의료급여 수급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현황

(단위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 이상 가구
기준 중위소득의 40%(A)	831,157	1,382,462	1,773,926	2,160,386	2,532,275	2,891,192	3,243,006
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32% 초과 40% 미만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(B)	468,554	943,273	1,182,684	1,590,985	1,771,624	2,248,524	2,505,749
차액(A - B)	362,603	439,189	591,242	569,401	760,651	642,668	737,257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추계 결과,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,246억원(연평균 1,649억원)으로 추계됨

- 2025년도 예산안 상의 국고보조율(83.61%)을 적용한 결과 국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,895억원(연평균 1,37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시 추가재정소요	1,488	1,563	1,643	1,730	1,823	8,246	1,649
국비	1,244	1,307	1,374	1,446	1,524	6,895	1,379
지방비	244	256	269	283	299	1,352	270

주: 국비는 2025년 예산안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(83.61%)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결정함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